

농민영수증

1. 공급자 (농민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농가 주소			
연락처		주생산 품목	

2. 공급받는 자 (구매 사업자)

상 호 명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 성명		업태 / 종목	
사업장 주소			

3. 거래 내역

거래일자	품목 (농산물)	규격 / 단위	수량	단가	금액 (원)
합 계					

4. 대금 지급 및 영수 확인

영수/청구금액	금 원 ()
지급 방법	☐ 계좌이체 ☐ 현금 ☐ 기타 () ※ 거래사실 입증을 위해 계좌이체 권장
농민 계좌	은행 계좌번호 (예금주:)

상기 금액을 농산물 정산 대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.

20 년 이후의 일

공급자(농민) : (인 또는 서명)

[안내사항 및 필수 첨부서류]

- | | |
|-----------|---|
| • 근거 규정 | 본 서식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, 사업자가 농어민(개인) 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정규증빙(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)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사용하는 지출증빙 서식입니다.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(2%)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. |
| • ‘직접’ 요건 | 농민 본인과 의 직거래만 해당합니다. 중간 유통상·도매상·영농조합법인 등을 거친 매입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,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민인 경우에도 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. |
| • 필수 첨부서류 | 금융기관 계좌이체 확인서(송금영수증). 가산세 면제를 위한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,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액이 손금(필요경비) 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농민 본인 명의 의 계좌로 이체하고 확인서를 본 영수증 뒤에 첨부·보관하십시오. |
| • 권장 첨부서류 | 농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(2022. 8. 18. 「농지법」 개정으로 ‘농지원부’에서 명칭 변경) 사본 1부, 신분증 사본·납품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입증에 수월합니다. |
| • 보관 의무 | 본 영수증과 첨부서류는 법인세·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|
| • 부가가치세 |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외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 하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 밖의 업종은 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
※ 본 서식은 일반적인 안내이며, 개별 거래의 세부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제주세무회계사무소